

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83. 3.

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이유

과학교육원의 설치목적과 조직의 성격상 과학정보와 과학교육의 조사·연구·보급 및 연구학교 지도·실험연수를 담당 운영하는 전문부서가 선임부서가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현재 서무과가 선임부서로 되어 있는 사항을 과학교육원 설치목적에 맞도록 지도부, 전시부, 자료부 및 서무과 순으로 개정함 (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).
- 각 부서의 분장사무를 부서서열에 따라 재 조정함 (안 제7조-제10조).

□ 근거법령 : 해당없음

□ 조례안 : 별 첨

□ 기타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 첨
- 예산상황 : 해당없음

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중 "서무과, 지도부, 자료부, 전시부"를 "지도부·전시부·자료부 및 서무과"로 하고, 동조 제2항중 "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하고, 각 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 연구사로 보한다"를 "각 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 연구사로 보하고,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"로 한다.

제7조를 제10조로, 제8조를 제7조로, 제9조를 제8조로,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